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5.(수)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배진석 의원 외 20명

2. 제안이유

-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 기숙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숙사 설치 및 설치 대상 학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숙사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숙사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기숙사 운영 규정 및 기숙사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기숙사 관리, 학생선발, 기숙사 학생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 12조)

아. 기숙사 사감 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4.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반영(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조사팀)
- 규제심사: 규제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교육청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결과 ‘원안동의’ (교육청 감사관)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학생생활과)
- 해당부서의견 : 반영(행정과)
- 비용추계서: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참조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2.9.28. ~ 10.3
- 의견제출: 없음

7.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기숙사 입소 학생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보장 및 학업 편의 개선을 통해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숙사 설치 승인 및 기숙사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기숙사 신설, 증축·개축·대규모 수선, 기숙사 내부시설 및 주요 비품 교체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숙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기숙사 운영규정 및 기숙사 학생자치회 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소득관리, 급식 등 기숙사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1조에는 원거리 통학자, 장애인 등 통학불편자와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안정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사감 배치시 청소년상담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된 사감은 매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경상북도 시군의 지리적 특성상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기숙사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경북도교육청 소관 기숙사 운영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전체 185개교 중 142개교(76.8%), 특수학교는 전체 8개교 중 6개(75%), 각종학교는 7곳(100%) 전체, 중학교는 267개 중 9개 학교(2.25%)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4월 기준 경북도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전체학생은 총 12만9천703명이며 기숙사 입소학생은 1만4천162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10.9%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95.8%는 고등학생으로 1만3천56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이는 전체 고등학생 6만2천986명 중 21.5%가 기숙사에서 일상과 입시 등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곧 학생의 일상 및 학습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경북도내 기숙사 운영 현황(2022.8.)]

구분	전체현황(A)		기숙사 운영학교 (B)	정원(명) (C)	현원 (명)(D)	실수 (개)	운영학교 비율 (a)/(B)	입소학생 비율 (b)/(D)
	학교수 (a)	전체인원 (b)						
중	267	63,810	9(3*)	742	341	156	2.25%	0.5%
고	185	62,986	142(3)	19,101	12,972	4,475	76.8%	21.53%
중고*				834	592**	241	중:3 고:3	
특수	8	1,444	6	295	257	67	75.00%	16.7%
각종	7	1,463	7	1,434	906	241	100%	61.9%
합계	460	129,703	157	20,972	14,162	4,939		67.5%

* 중고등학교 공통으로 운영하는 3개 학교의 경우 중·고 각각 3개 학교 합산,

** 인원은 고등학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현재 기숙사 운영학교의 입소 정원은 2만2천406명이며, 2022년 8월 현재 입소 인원은 1만5천68명으로 정원 대비 약 67.5%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
- 안 제4조 기숙사 설치 승인, 안 제5조와 기숙사선정위원회 운영, 안 제6조과 기숙사지원계획 수립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건강권을 위하여 기숙사

신설이나 증축의 경우 기숙사 1실당 입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임.

[경북도내 기숙사 인원 배정 현황(2022.8.)]

기숙사(개)	실수(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161개 학교	5,212	381	1,773	1,369	1,469	193

- 또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기숙사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향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실, 자습실, 온라인 양방향 수업실, 휴게실, 세탁실 등에 대한 적절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큰 기숙사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경북도내 기숙사 생활 및 학습 환경 현황(2022.8.)]

기숙사 운영학교	체력 단련실	자습실	온라인 수업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161	43 (26.7%)	128 (79.5%)	62 (38%)	93 (57.8%)	161 (100%)	153 (95%)

- 기숙사 청소용역 예산을 편성한 학교는 161개 학교 중 110개교로 전체 68%에 불과함. 쾌적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든 기숙사의 청소 관련 규정이 필요함.

안 제10조제3항의 대청소 및 소독관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 통학불편자와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숙사 생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생활과 학생의 인권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사감은 현재 165개교 중 104개교가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등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안 제13조에서 기숙사 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 등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배치된 사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감한 청소년기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학생이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일상을 영위함에 있어 생활 및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로서 기숙사의 설치 승인, 기숙사 운영에 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와 기숙사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